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안도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6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22.

발의자 : 안도결 · 임호선 · 정일영

조인철 · 정준호 · 이용선

조승래 · 이언주 · 전용기

박홍배 · 박민규 · 김남근

박홍근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금리 ·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'24.2/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 등에 따라 지방 주택수요가 둔화되는 등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따라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(안 제71조의2제1항).

또한,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(안 제77조의3)하고,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(안 제98조의9).

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의2제1항 중 “인구감소지역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지역에”로 하 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인구감소지역

2.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

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



